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전담인력 지정 및 외부 전문가
위촉 의무 신설 등 〉

■ 김승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776)

2026. 2.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전담인력 지정 및 외부 전문가 위촉 의무 신설 등(안 제50조의3제2항 등)	2
※ 참고자료	10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승수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5. 12. 31.

다. 회 부 일 : 2026. 1.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하고 해당 등급분류책임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체등급분류에 관한 업무는 등급분류책임자가 아닌 전담인력이나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수행하여야 하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이러한 인력을 지정해야 할 의무가 없어 등급분류 업무를 전문성 있게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임.

이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자체 등급분류를 위해 자격을 갖춘 전담인력을 두고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며,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책임자뿐만 아니라 전담인력도 교육하도록 함으로써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전문성을 갖추고 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제2항 등).

Ⅲ. 검토의견

1.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전담인력 지정 및 외부 전문가 위촉 의무 신설 등 (안 제50조의3제2항 등)

개정안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하여금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전담인력을 두도록 하고, 등급분류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소속 직원이 아닌 전문가를 2인 이상 위촉하도록 하며, 등급분류책임자뿐만 아니라 전담인력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50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u><신설></u>	제50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u>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전담인력(업무위탁 계약을 맺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전담인력”이라 한다)을 둘 것</u> 4. <u>등급분류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2인 이상의 전문가(소속 직원이 아닌 전문가를 말한다)를 위촉할 것</u>
<u><신설></u>	

현행	개정안
③ ~ ⑤ (생략) 제50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 사항)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하고 해당 <u>등급분류책임자는</u>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것 4. 5. (생략) 제50조의8(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 업무)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제50조의4제3호에 따른 <u>등급분류책임자에</u> 대한 온라인 교육시스템과 대면 교육체계 구축 및 운영 5. ~ 7. (생략) ② ~ ④ (생략) 제72조(직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5. (생략) 5의2. <u>등급분류책임자</u> 및 온라인비디오물 이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 5의3. 6.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0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 사항) ----- -----. 1. 2. (현행과 같음) 3. ----- ----- -----<u>등급분류책임자와</u> <u>전담인력</u> <u>은</u>----- ----- 4. 5. (현행과 같음) 제50조의8(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 업무)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등급분류책임자</u> <u>및</u> <u>전담인력에</u>----- ----- ----- 5.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2조(직무) -----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u>등급분류책임자와</u> <u>전담인력</u>----- ----- 5의3. 6.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50조¹⁾에 따라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나, 제50조의2, 제50조의3 및 제50조의5에서는²⁾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하여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온라인비디오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등급분류) ①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해당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비디오물”이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영화가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12의2. “온라인비디오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비디오물을 말한다.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①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는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그 온라인비디오물의 제공 전에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제50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50조의5(자체등급분류의 효력) ①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온라인비디오물은 그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공급 및 제공하는 범위에서 제50조제1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아울러, 현행 제도 하에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지정·재지정 과정에서 조직 운영 체계 및 인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이 심사 대상이 되며, 3)4)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 결과에 대하여 직권재분류 또는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2.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가. 온라인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법인

나.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2. 최근 5년간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가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자체등급분류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재지정**을 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 및 향후 계획의 적정성

2. 최근 5년간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가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3. 제50조의8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개선조치의 이행 여부

⑤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재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영상물등급위원회 자체등급분류 업무규정 별표 1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세부기준

II. 자체등급분류 절차 운영 계획의 적정성

1. 책임자 및 조직 운영 계획

가. 자체등급분류 조직 운영

1) 자체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현황

2) 자체등급분류 **중사인력**(자체등급분류, 등급분류 관련 불만처리, 청소년 보호포함)의 적정성

3) **자체등급분류 업무 담당 인력의 전문성**(영화·미디어 및 등급분류 관련 이력 또는 등급분류 관련 교육 이수 이력 여부)

나. **자체등급분류 책임자 지정 및 역할**

1) 법 제50조의4에 따라 지정한 책임자가 임원 또는 자체등급분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2) 다음 각 사항에 대한 역할 및 업무 등을 책임자가 담당하거나 조직 내 협력체계 운영을 통해 수행하는지 여부

①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총괄

② ①의 업무와 관련한 청소년 보호 및 이용자의 불만처리 업무와의 협력체계 운영

다. 자체등급분류 책임자 교육이수 등 관리

1)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등급분류 책임자 및 담당자 교육 이수** 여부 및 최초 지정 후 교육 이수 계획

2) 자체등급분류 업무 운영 관련 정보(등급분류책임자, 담당인력 등) 변경시 통보 계획

등급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사후관리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⁵⁾

또한, 현행법 제50조의4⁶⁾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하여 등급분류 책임자의 지정 및 교육 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7(직권등급재분류 등)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이 제50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새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과가 등급분류 기준에 현저히 위배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간의 등급분류 결과가 상이한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등급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 또는 취소 결정을 한 경우 이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요구 및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0조의8(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제공
2. 온라인비디오물의 신속한 등급분류 절차를 위한 정보통신 시스템 구축 및 운영
3. 제50조의4제1호 및 제2호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온라인 사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제50조의4제3호에 따른 등급분류책임자에 대한 온라인 교육시스템과 대면 교육체계 구축 및 운영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 지원
6. 자체등급분류 정보 이용자의 수용능력 향상을 위한 온라인 교육시스템과 대면 교육체계 구축 및 운영
7. 자체등급분류 정보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자체등급분류지원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50조의4제2호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공중에 공개할 수 있다.

④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50조의4에서 정하는 사항 및 제50조의7제4항의 조치의무에 대한 준수 여부를 평가한 후 평가 결과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업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50조제5항에 따른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것
2. 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하여 제65조에 따라 등급과 내용정보 등을 표시하고 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할 것
3.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하고 해당 등급분류책임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것
4. 자체등급분류 업무와 관련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따를 것
5. 그 밖에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실제 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인력의 자격이나 외부 전문가 참여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등급분류 업무를 전문성 있게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자격을 갖춘 전담인력의 배치와 외부 전문가 위촉을 의무화하고, 전담인력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자체등급분류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⁷⁾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업무운영에 관한 조건을 부과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2.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일 것

가.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또는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또는 자본금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나. 게임산업 및 게임문화 진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일 것

다.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이거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일 것

2. 자체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등급분류책임자(지정받고자 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등급분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와 전담인력(업무위탁 계약을 맺은 자를 포함한다)을 둘 것

3.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소속 직원이 아닌 2인 이상의 전문가를 위촉할 것

4.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수행을 위한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위원회의 시스템과 연계되는 기능을 포함한다)을 구축할 것

5. 최근 3년간 이 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제재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는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으로 등급분류책임자 및 전담인력을 둘 것을 명시하고, 등급분류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소속 직원이 아닌 2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의3⁸⁾에서는 등급분류책임자 및 전담인력에 대한 교육의무와 외부전문가 활동보고서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등급분류 전담인력의 법률상 명시와 외부전문가 위촉은 자체등급분류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서 필요한 입법이라는 의견임.

다만, 전담인력 및 외부전문가의 자격요건을 문화체육관광부령에 포괄 위임하는 방식은 과도한 규제로 인식될 소지가 있으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유사 입법례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자격요건의 규정 방식과 위임 범위를 조정하는 등 조문 구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7. 등급분류책임자 및 전담인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연 4회 이상 받을 것
8. 등급분류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의 자료요청에 따를 것
9. 제21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한 전문가의 활동보고서를 제10호에 따른 평가 실시 1개월 전에 위원회에 제출할 것

한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티빙, 콘텐츠웨이브, 위버스컴퍼니 및 애플 코리아 유한회사 등에서는 전담인력 지정 및 외부전문가 위촉 의무화에 대하여, 현행 제도 하에서도 지정·재지정 및 연례 평가를 통해 인력 및 조직의 적정성이 관리되고 있는 만큼 별도의 인력 요건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은 중복 규제에 해당하여 사업자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또한, 외부전문가 위촉 의무는 자체등급분류 제도의 신속성과 자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직권재분류 및 사후관리 제도가 이미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과 실효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76

참고 1

타 부처 및 유관기관 의견

부처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영상물등급 위원회 (‘26. 1. 14.)	○ 자체등급분류 전담인력 도입 관련 - 온라인 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영화비디오법 제50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 준수사항) 제3호에 따라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자체등급분류 업무는 등급분류 책임자보다는 등급분류 담당인력을 통해 상시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므로 공정하고 전문적인 등급분류를 위해서는 전담인력 운영을 사업자 지정·재지정 요건과 등급분류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개정안에서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자격요건에 전담인력만 두도록 하고 있으나, 등급분류책임자와 전담인력 모두 두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개정안의 내용 일부 수정 필요 ○ 외부 전문가 활용 근거 마련 관련 -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등급분류소위원회에서 등급분류업무를 수행하지만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 책임자 등 소수 인원이 등급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이슈 또는 논란이 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 적용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다만 외부전문가 위촉 및 활용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업무적정성 평가 시 외부전문가의 활동보고서를 영상물등급위원회 제출하도록 개정안의 내용 일부 수정 필요

참고 2

협회, 민간업계 및 시민단체 의견

협회명/사업자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한국인터넷 기업협회 (26. 1. 14.)	○ 자체등급분류 전담인력 도입 관련 -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법률에 따라 자체등급분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및 절차 운영의 적정성을 매년 평가받고 있어 법률 개정의 목적과 필요성이 불투명하며, 현행 제도와 중복되는 이중 규제임 - 기존 제도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인적 역량을 충분히 평가 및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인력 요건을 법제화 하는 것은 실질적 공익 증진 없이 행정적 절차만 복잡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 ○ 외부 전문가 활용 근거 마련 관련 -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사실상 외부 전문가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필요성과 실익이 불분명함 * 영등위에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분류한 등급에 대해 직권으로 재분류 결정을 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외부전문가 역할을 담당 - 사업자별로 외부 전문가 추가 위촉이 등급분류의 적정성과 청소년 보호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오히려 영등위의 공적 관리 기능과 역할이 중첩되어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제기
티빙 (26. 1. 16.)	○ 자체등급분류 전담인력 도입 관련 - 자격요건을 갖춘 전담인력 의무화, 외부 전문가 2인 이상 위촉 의무로 부과할 경우 사실상 과거 영등위 중심의 사전등급심의 체계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 자체등급분류제도의 근본 취지를 무력화함 - 모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전담 조직을 구축하고 내부 기준에 따라 성실히 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추가적인 전담인력 및 외부 전문가 위촉을 의무화하는 것은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부정하는 전제에 기반한 과도한 규제 ○ 외부 전문가 활용 근거 마련 관련 - 모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전담 조직을 구축하고 내부 기준에 따라 성실히 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추가적인 전담인력 및 외부 전문가 위촉을 의무화하는 것은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부정하는 전제에 기반한 과도한 규제

콘텐츠웨이브 (26. 1. 16.)	○ 자체등급분류 전담인력 도입 관련 - 등급분류 책임자 지정과 더불어 전담인력까지 지정의무를 두는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됨 * 관련 입법례를 살펴보면 전기통신사업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상 책임자 지정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전담인력까지 법률상 명시하고 있지 않음 ○ 외부 전문가 활용 근거 마련 관련 -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가 외부전문가 위촉을 법률상 명시하고 이에 대한 자격요건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헌법상 자율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위버스컴퍼니 (26. 1. 16.)	○ 자체등급분류 전담인력 도입 관련 - 이미 등급분류책임자 지정과 평가 절차 단계에서 담당 조직 및 인력에 대한 적격성 검증 절차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정 수준의 관리·감독 체계는 확보되고 있다고 판단 - 그럼에도, 추가적인 요건을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규제 강화의 필요성에 비해 사업자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할 우려 ○ 외부 전문가 활용 근거 마련 관련 - 외부 전문가 2인 이상을 상시 위촉하고 지속적으로 자문료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는 사업자에게 과도한 재무적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 자체등급분류 제도의 핵심 취지인 콘텐츠 유통의 신속성·적시성·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오히려 약화
애플코리아 유한회사 (26. 1. 19.)	○ 자체등급분류 전담인력 도입 관련 - 등급분류역량은 등급분류를 실제로 수행한 경험과 등급분류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형성될 수 있으며, 전담인력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을 둘 경우 이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신규인력의 유입을 막을 수 있음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담인력을 두도록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거나 많은 부작용을 야기 ○ 외부 전문가 활용 근거 마련 관련 - 등급분류에 대한 전문가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외부 전문가 위촉을 의무화하는 것은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야기 - 등급분류업무에 대해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후관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외부 전문가 위촉은 실효성이 없음